

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☐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!

김영한 위원입니다.

☐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3호

「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☐ 이 개정안은 상위법 제명 및 용어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
반영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
비하려는 것으로,

☐ 주요내용은,

- 현행 조례 내용 중 “「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”을
“「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하고 (안 제14조 제5호 관련),
- “해촉”을 “위촉해제”로 하며(안 제5조 제5항 관련),

- “감안”을 “고려”로 하고(안 제10조 제1항 관련),
- “출·퇴근”을 “출근·퇴근”으로 하며 (안 제10조 제3항 관련),
- “경과되지”를 “지나지”로 하고 (안 제7조 제3항 관련),
- “신·증축”을 “신축·증축”으로 하며 (안 제11조 관련),
- “부여할”을 “줄”로 하고 (안 제13조 제2항 관련),
- “별도의”를 “따로”로 정비(안 제3조 관련) 하려는 것입니다.

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